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역명	과업내용	추정금액 (천원)	용역 기간	평가 방법
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6,230,700	착수일 로부터 47개월	PQ (면접)

※ 2026년 예산 : 금500,000천원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과

다. 가격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결과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026년 10월 입찰 예정)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 6. 26.)에 따르며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으로 하고,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우리 부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제출자는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가.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하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 4)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과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다.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취소(해지)하며, 제출 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은 타 용역에 중복으로 응모 할 수 없습니다.(동일 기술인으로 타 용역 응모시 무효처리 함)

4.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나. 제출일시 : 2026. 9. 30.(수) 09:00 ~ 16:00

다. 제출장소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정책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부청사로2, 8층 해양수산정책과)

라. 제출방법

- 1)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가 인감도장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하고, 평가서 제출일 등록부 작성시, 대표사 PQ담당자 명함제출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기재 요망

-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한 대표사에서는 제출공문, 제출자 재직증명서, 위임장, 공동수급대표자선임제, 공동수급협정서 스캔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별도 메일(sj02@korea.kr)로 제출

마.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2)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사 선임제,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1부
-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I) 1부(원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 파일(USB)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자기소개서)(II) 6부(1부는 원본에 포함

하여 제출하고, 잔여 5부는 “회사명 미표기”로 별도로 제출)

※ 우리 부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등 검증을 위한 면접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6. 기타 및 유의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1부(원본) 및 평가서파일(USB)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부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평가 결과는 사업 수행 능력 평가 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면접”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 라.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 수, 착수 시기, 용역 기간, 사업대상지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 시점,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 처리
- 마.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설계서 및 과업 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바.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 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받지 않으며,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

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제출 서류 작성은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 기준 및 작성 지침 외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정책과 (☎054-880-7738)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